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71
----------	-------

발의연월일 : 2019. 11. 13.

발의자 : 박완주 · 김성찬 · 오영훈

장석진 · 이양수 · 손금주

손혜원 · 윤준호 · 황주홍

경대수 · 김태흠 · 김현권

정운천 · 강석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사용을 필요로 하는”을 “사용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등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착수하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공작물의”를 “인공구조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에 착수한”을 “사업을 시작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4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함에 있어”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사업에 착수하지”를 “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 ----- -----. ----- --<u>등은</u>-- ----- ----- ----- ----- -----.</p>
<p>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 ----- ----- ----- ----- ----- ----- ----- -----.</p>
<p>1. (생략) 2.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u>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착수하지</u> 아니한 경우</p>	<p>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u>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작하지</u>-----</p>
<p>3. (생략) ② (생략)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p>	<p>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 -----</p>

시설등 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15조(관련 일·허가등의 의제)

인공구조물의

② • ③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련 일·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u>한한다</u>)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 ----- <u>한정한다</u> ----- ----- -----
14. ~ 26. (생 략)	14. ~ 26. (현행과 같음)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u>착수·변경</u> 또는 완료의 신고	27. ----- ----- <u>시작</u> ----- -----
28. ~ 33. (생 략)	28. ~ 33. (현행과 같음)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 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 의 허가에 대한 것에 <u>한한다</u>)	34. ----- ----- ----- ----- ----- <u>한정한다</u> -----
35. (생 략)	3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u>할</u> 에 <u>있어</u>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③ ----- ----- <u>하</u> <u>는 경우</u> ----- ----- -----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9
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
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
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
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
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7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부터 2년 이내에 <u>사업에 착수</u> <u>하지</u> 아니한 경우 ② · ③ (생 략)	----- <u>사업을 시작</u> <u>하지</u> ----- ② · ③ (현행과 같음)
--	--